급융위원회

보도 설명



2111	
	그유가도의

보도

배포 후 즉시

배포 2020.8.24.(월)

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			김영근 사무관
책 임 자	김 기 한(02-2100-2630)	담 당 자	(02-2100-2642)
격음자	금감원 분쟁조정1국장	8 8 4	양진태 분쟁조정총괄팀장
	박 종 수(02-3145-5210)		(02-3145-5212)

제 목 : '분쟁조정안 금융사 연기횟수 제한 · · · 실효성 높인다' 제하 기사(8.25일자/24일 가판) 머니투데이)에 대한 설명

1. 기사내용

- □ 머니투데이는 8.25일자(24일 가판) 「<u>분쟁조정안 금융사 연기횟수</u> 제한…실효성 높인다」제하 기사에서, 다음의 내용을 보도
 - ① "금융당국이 분쟁조정안에 대해 금융회사가 연기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. '키코'(외환파생상품) 분쟁 조정안처럼 결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."
 - ② "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분쟁조정과 관련, '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'는 규정이 있다. 금융당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이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."

2. 동 기사내용에 대한 입장

□ 금융위와 금감원은 동 기사내용에 언급된 **방안이나 계획을 검토한**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
할 경우 출처를 표기
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

